

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21. 2. 3.(수) 10:02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한상혁 위 원 장
김효재 상임위원
김창룡 상임위원
안형환 상임위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김 현 부위원장 (1인)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- 2021년도 제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⑥ 의결사항

가.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21-04-005~007)

- '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'에 대해 이소라 인터넷 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,

- 이통3사(에스케이텔레콤(주), (주)케이티, (주)엘지유플러스)의 「위치정보법」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 보고, 제32조에 따른 통계자료 제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, 이통3사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개선권고와 함께 에스케이텔레콤(주) 450만원, (주)케이티와 (주)엘지유플러스 525만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함

나.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관련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한 건 (2021-04-008)

- o ‘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관련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한 건’에 대해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 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게재·제한 조치를 할 경우,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사용해야 함에 따라 성능평가 수행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지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함

7] 보고사항

가. 「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·과장광고 가이드라인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o ‘「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·과장광고 가이드라인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’에 대해 진성철 통신시장조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 - 2015년 제정 이후 나타난 새로운 위반사례 반영, 자율조치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등 가이드라인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함

※ 주요내용

- ①과장·기만광고 분류기준을 세분화, ②허위·과장광고 관련 신유형 사례 반영, ③‘중요한 이용조건’ 관련 용어정의 신설, ④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관리 강화 등

8] 기타사항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기로 함

6. 폐 회 (10:34)